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23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김희정·김상욱·김도읍

서지영 · 권영진 · 김은혜

김종양 · 김승수 · 박성민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보증을 신청하는 자의 금융정보 등의 자료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금융정보 등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대위변제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율은 저조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자산 등을 조회할 근거가 없어 법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만 채무자의 재산 확인이 가능해 악성임대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채무를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

적이 있음.

이에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정보·신용정보와 가상자산거래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은닉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등).

법률 제 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 ①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이 조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에게 금융정보등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 정보(이하이 조에서 "가상자산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금융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를 제 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금융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및 가상 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 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 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를 이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6항"을 "제33조제5항, 제34조의2제6항 및 제34조의6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
	산거래정보의 제공) ① 공사는
	<u>상</u> 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상
	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제12조제2항에도 불
	구하고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장, 「특정 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
	다)에게 금융정보등 또는 「특
	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

정보(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 산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 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신용정 보집중기관의 장 및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u>관한 법률」 제4조</u>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 항 및 제3항,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 제12조제2항에도 불 구하고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 자의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 산거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금융 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 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 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 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 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 한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 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 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 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 보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제 34조의2제6항 및 제34조의6제5

② (현행과 같음)
